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폭염·한파 등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이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3 신설).

II. 검토의견

가. 「기상법」 상 특보 내용 인용시 조문 번호 적시

- 개정안은 장병의 건강을 위해서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지휘관이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기상법」상의 특보 발표는 지휘관의 조치의무 발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기상법」의 특보 규정을 보면, 폭염·한파시 발표되는 보통의 특보¹⁾ 뿐만 아니라, 특보의 정의 규정²⁾, 해양기상특보³⁾,

1) 「기상법」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2) 「기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상특보⁴⁾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만약 개정안과 같이 “「기상법」에 따른 특보”라고 하면, 예비특보, 태풍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발표시 지휘관의 조치의무 발생 여부가 다소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유사 입법례⁵⁾를 살펴보면, 「기상법」상 특보와 관련된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 조문 번호를 함께 적시하여 어떤 종류의 특보를 인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기상법」에 따른 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라고 수정하여, 지휘관의 조치의무 발생 조건으로서 특보가 한파·폭염 등의 기후 재난 상황에서 발표되는 특보를 말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3) 「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4) 「기상법」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④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④ 유·도선은 기상특보(「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발효 시 운항할 수 없다.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24의3. “항공교통데이터”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① 지휘관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하여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에는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군인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 ----- 「기상법」 제13조 의2에 따른 특보 ----- ----- ----- ----- -----.

나. 국방부 훈령 위임 규정의 자구 수정

- 개정안은 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를 규정하며, 구체적 사항을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인 훈령에 위임하는 경우, 법문상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라고 표현하므로⁶⁾, 개정안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6) 「군인복지법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조(목적) 훈령은 상시대기, 도서벽지 근무 및 빈번한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인에게 제공되는 군 주거시설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 정 의 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국방부장관 훈령으로</u> 정한다.	제17조의3(폭염·한파 등에 따른 조치 등) ③ ----- ----- <u>국방부장관이</u> ----.

(전문위원 김 성 완)